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⁴ B25F 1/00	(11) 공개번호 특 1991-0000305	(43) 공개일자 1991년 01월 29일
(21) 출원번호 특 1990-0008707		
(22) 출원일자 1990년 06월 14일		
(30) 우선권주장 1-154900 1989년 06월 16일 일본(JP)		
(71) 출원인 주식회사 델 타 이와모도 와헤이		
(72) 발명자 일본국 히고 우고겐 고오베시 히가시나가구 스미요시 야마데 5쵸메 12-8 나카무라 다이지로		
(74) 대리인 일본국 히고 우고겐 오노시 시모 기시 쵸 662-2 배동훈		

심사청구 : 없음

(54) 투울 처크(Tool Chuck)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투울 처크(Tool Chuck)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투울 처크의 종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회전력증가 기구의 분해 사시도,
제3도는 본 발명중 구르기줄홈의 회전 동작 설명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처크 본체의 선단측 중심부에 복수의 처크 멈춤쇠를 넣고 좁게 슬라이드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처크 본체의 외주부에 끼워붙임한 조작환의 정역 회동으로 나사환을 회동해서 그 나사환으로 처크 멈춤쇠를 넣고 좁히는 방향으로 나사 이송을 하는 투울 처크에 있어서, 처크 본체와 처크 멈춤쇠와의 사이에 처크 멈춤쇠가 공구를 끼워들을 하였을때 발생하는 반동력으로 처크 본체에 압접 고정하고 반동력이 해제 되면 압접 고정도 해제되는 고정수단을 설치하여, 이 고정수단과 조작환과의 사이에 고정 수단의 처크 본체에 대한 고정으로 상기 조작환의 회동을 감속해서 회전력을 증가한 출력을 상기 나사환에 출력하고, 상기 고정수단의 고정 해제로 조작환의 회동을 나사환에 출력하는 회전력 증가 수단을 설치한 투울 처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작환에 편심해서 유동가능하게 끼움을 유지함과 동시에 나사환에 연동으로 연결한 입력환과 처크 본체에 고정된 고정수단을 처크 본체의 축심 방향으로 배설함과 동시에 입력환과 고정수단과 서로 대향하는 상호면에 파의 수자차를 지닌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구르기 줄홈을 새겨만들어서, 구르기 줄홈에 보울 개재시켜서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나사환에 고정되는 출력환과 조작환에 편심해서 유동 가능하게 끼움이 유지되는 입력환과 처크 본체에 고정되는 고정수단을 처크 본체의 축심방향으로 대향함과 동시에 입력환과 고정수단이 서로 대향하는 상호면에 파의 수자차를 지닌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구르기 줄홈을 새겨 만들어서 이 구르

기 줄힘에 보울을 개재시켜서 입력환과 출력환간에 동력 전달용의 보울을 끼워 넣어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조작환에 대하여 편심으로 유동 가능하게 끼움을 유지함과 동시에 나사환과 연동으로 연결함 입출력환과 처크 본체에 고정되는 고정 수단을 내외로 중합함과 동시에 내외 대향부의 상호간에 파의 수자차를 지니는 사이클로이드 기어를 새겨만들어서 치합시켜서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조작환의 중앙 내주면에 처크 본체의 축심에 대하여 편심으로 된 통상 조작부를 형성하고 이 통상 조작부의 외주면에 베어링을 끼워 넣어 유지하여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조작환의 내주면에 처크 본체의 축심에 대하여 편심하는 내주면에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조작환에 고정된 입력환과 이 입력환과 처크 본체에 고정되는 고정수단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나사환에 고정되는 출력 리테이너를 처크 본체의 축심 방향으로 배설함과 동시에 출력 리테이너에 입력환과 고정수단에 접합하고 이들의 상대 이동으로 자전하는 회전체를 유지해서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회전체를 로울러로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회전체를 베벨기어로 형성하고, 이 베벨기어에 접합하는 입력환과 고정수단에 기어면을 새겨만든 투울 처크.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 및 제9항에 있어서, 고정환과 처크 본체는 서로가 대향해서 압접하는 압접면으로 형성한 투울 처크.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 및 제9항에 있어서, 고정환과 처크 본체가 서로 압접하는 테이퍼상의 압접면으로 형성한 투울 처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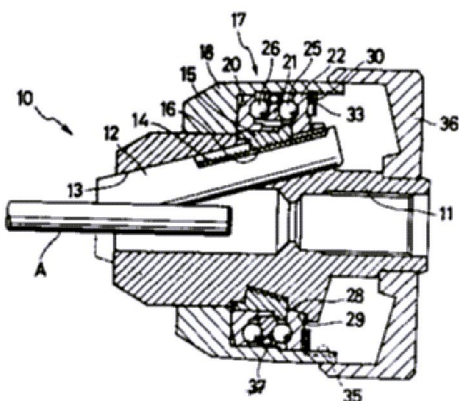
청구항 12

제10항과 제11항에 있어서, 고정환의 후면측 원주상에 치면을 새겨 만들고 이 치면에 고정환을 반 압접 방향으로 탄발하는 탄성부재를 걸어 맞춤하고 탄성부재를 조작환으로 유지한 투울 처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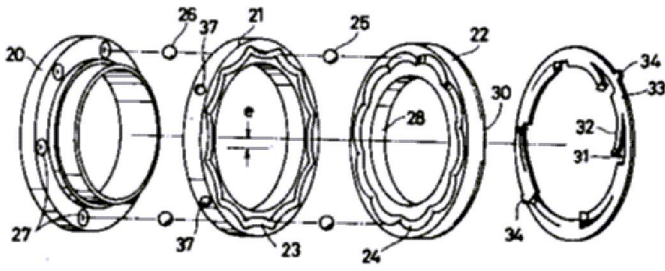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